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 변경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03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 변경(안 제5조제1항)	2

I. 제안경위

2025년 2월 10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가 결정됨. 하지만 이 중 행정부의 경우 조직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관 공무원의 실질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처·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 변경(안 제5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 ‘행정부’로 규정되어 있는 행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u>행정부</u>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① ----- ----- ----- <u>「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이하 “행정부”라 한다)-</u>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공무원노조의 설립 최소 단위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으로 하도록 명시하면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부의 경우 전체 부·처·청·위원회가 행정부로서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며, 근무시간 면제한도 또한 전체 행정부 기준으로 부여받게 됨.

그러나 ^①행정부의 개별 기관은 임용권·예산권을 각각의 기관별로 운용 중에 있으며 기관별 업무에 차이가 있어 교섭을 통해 개선해야 하는 노동조건도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부처별 노동조합의 활동내용과 활동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²⁾, ^②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원수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은 각 부처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는 반면 지방공무원은 243개(광역시 17, 기초 226) 단위로 개별적으로 구성되므로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면제 시간이 축소되는 문제³⁾가 있으며, ^③행정부에 통합하여 부여된 근무시간 면제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채준호·유진선·손동희·김윤희,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관련 현황 및 쟁점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한국노동연구원, 2024.

한도를 부처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행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청 및 행정기관’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정을 개별 기관 단위로 하려는 것으로, 부처별로 상이한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반영하고 근무시간 면제한도 배정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은 행정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부 전체를 대표하는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되 다만 개별 기관에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만 개별 기관에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⁵⁾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경우 전체 공무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보수·복지 등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각각의 기관별 노동조합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하는 것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

3) 김명중,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과 쟁점」, 『이슈와 논점』 제1962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4) 참여와 혁신, “합법적 노조 활동의 길’ 공무원 타임오프 도입…다음 과제는?”, 2024.11.27.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체교섭 체계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최소 단위를 규정한 것은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통일적으로 결정되는 점과 행정부 단위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 정책적 고려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인사혁신처는 행정부의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근무시간 면제 한도만이 아니라 행정부 교섭체계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